

제 114

행정명령(EXECUTIVE ORDER)

**법률 및 법규의 특정 조항의 정지 또는 수정의 지속**

2013년 6월 28일에 본인은 Broome, Chenango, Clinton, Delaware, Essex, Franklin, Herkimer, Madison, Montgomery, Oneida, Otsego, Tioga, Schoharie, St. Lawrence 및 Warren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언하는 행정명령 제103호를 발행하였습니다.

2013년 7월 5일에 본인은 추가적으로 Niagara 카운티에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103호를 수정한 행정명령 제108호를 발령하였습니다.

행정법 제29-a조는 법령, 지방법, 조례, 명령, 법칙 또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, 이를 정지, 변경 및 수정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

본인은 2013년 7월 1일에 교통 인프라 복구 관련 법률 및 법규 조항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104호를 발령하였습니다. 그리고

2013년 7월 31일에 본인은 행정명령 제104호로 명령된 법률 및 법규 조항 정지를 2013년 8월 30일까지 지속하는 행정명령 제111호를 발령하였습니다. 그리고

2013년 9월 6일에 본인은 행정명령 제104호로 명령된 법률 및 법규 조항 정지를 2013년 9월 29일까지 지속하는 행정명령 제113호를 발령하였습니다. 그리고

행정법 섹션 29-a에 따르면 법 조항 정지는 30일 이상 될 수 없으나, 주어진 상황 및 연관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여, 정지기간이 30일 추가로 연장될 것이므로;

**본인 ANDREW M. CUOMO** 뉴욕주 지사는 행정법 제2-B조의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재고려한 후에, 행정명령 제104호로 명령되고 행정명령 제113호로 연장된 법률 및 법규 조항들의 정지를 2013년 9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29일까지 지속할 것을 명령합니다.

이천 십삼년 시월 칠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

권한 및 주 인증의 권한에 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